

둘째, 회관 사용을 쉽게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

-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전당으로 회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정부공문서 규정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일부 위임 전결로 처리할 것임.

셋째, 노동복지회관 운영 효율을 위한 의견 수렴 기구 설치에 대하여 ...

-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가 없어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만약 시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위반되거나, 부조리 등이 발생될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가 가능하므로 의견수렴기구 설치는 회관운영 실태를 계속 관망한 후 꼭 의견수렴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종말처리장)
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지역개발특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1. 5. 25
나. 제안자 :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29)상정
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 도시생활오수및 공장폐수로 인하여 한강수계인 굴포천이 하수천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도시기능의 파양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비하고,
-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하여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예

상되므로 도시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을 결정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최종방류수역인 한강수질을 개선코자 함.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평)	
시설	하 수 도 (종말처리장)	중구 대장동 538의 207필지	372, 126.35 (112, 568.2)	국유지 26,242.75 (7,938.4)포함

3.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종말처리장이 인천과 부천 두시가 사용할 텐데 큰시인 인천에 유치될 검토해 보았는지(또, 우리시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조건일지라도)	○ 중동신도시 하수시설이 오·우수가 분류되는 분류식이어서 정화조가 없는 연유로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인천에서는 현재로서 별로필요가 없으며) 건설부의 부천물량이 크니 인천과 같이 부자 부천에 유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우리시가 면적이 애초한 실정에 과연 112,000천평씩이나 필요한지 축소조정가능한지?	○ 도시계획을 20년후를 대비하여 인구 130만명의 수용을 감안하여 설계할 수 밖에 없음.
○ 토지소유주와 마찰은 없는지?	○ 등기로 소유자에 연락 2개신문 공람 공고 하였음.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도시계획시설(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지역개발특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5. 25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29)상정
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류 철도경지권 이용하여 역무 시설 현대화와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철도청장으로부터 신청이 있음.

나. 주요골자

- 용도지역 : 자연녹지 28,773를 일반상업 지역 28,773로 변경
- 시설녹지 : 118,893를 108,753로 변경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요지	답 변 요 지
○ 부천역민자역상의 당위성이 미흡한데	○ 경인전철로 남북간 동선이 절단된 상태에서 부천역을 중심으로 계개발을 통하여 부천시의 중심 상업지구로 육성하여 전철을 지하화하고 현전철 노선부분을 지하화 하여 이의 연결은 당연함(차량통과 가능 주차장 750대 수용)
○ 남부역쪽 잠상인의 철거대책은	○ 해당초지가 전부 국유지(철도청)로서 이의 민원은 문제가안된것으로 사료됨.
○ 민자역사가 생길 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당은?	○ 인구집중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완료 단계에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해당없음

나. 반대토론 : 최용섭 - • 8층민자역사 건설로 교통난 심화
• 민자역사 참여자인 소수인에 이익편중

5. 심사결과

부 결

6. 소수의견의 요지

민자역사의 필요성도 있음.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5. 25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29)상정
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29)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 '97. 4. 10 신. 활주로 개설과 함께 대형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활주로 인접 지역으로서 인근에 화공약품저장탱크(서울 소재)가 있어 폭발사고 우려 및 심각한 항공기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지역이며
- 동 지역에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도시계획시설(공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할 것을 의결한다.

• 결정(변경)조서

● 기정 : 공항시설 중구 고강동 90-4번지 일원 84,13평

● 변경 : 공항시설 중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122,246평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요지	답 변 요 지
○ 공항시설 지역주 민 이주대책? 360동이 어디로	○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임(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아)
○ 이주대책시 부천시에서의 제정부담이 없어야, 또한 서울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 중앙정부, 서울시와 체계적인 협의로 추진하고 우리시 예산은 안쓰도록